

## 美 FCC의 주파수 임대 개선안의 내용과 파급효과

공정경쟁연구실 주임연구원 유기주  
(T. 570-4082, kjyoo@kisdi.re.kr)

2003년 5월 15일 FCC는 무선통신에 대한 주파수 임대 권한을 사업권보유(주파수 보유) 사업자에게 부여하고 임대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을 통과시킨 것으로 발표되었다. 본 고에서는 경쟁촉진과 신규 사업기회 제공을 통해 미국 통신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FCC의 '주파수 임대 허용 정책의 내용과 파급효과'에 관해 간략히 살펴 보겠다.

### 1. 배 경

FCC는 '1996 Intermountain Microwave Criteria'를 통해 지난 40년 동안 주파수 확보를 위해서는 입찰을 거쳐야 했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주파수 임대를 금지해 왔다. 이러한 주파수 임대 금지정책으로 통신업체는 주파수 확보에 소요되는 과도한 입찰비용을 부담하였으며 서비스 지역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FCC는 2000년 11월 부문적 주파수 임대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이미 제안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규제기관이 주파수 임대를 촉진시키는 문제와 동시에 주파수 이전시 FCC의 승인을 요구하는 1934년 통신법 310조 의무조항과의 조화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주파수 임대 허용작업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했다.

그러던 과정에서 최근 FCC의 "Spectrum Policy Task Force"는 주파수 임대를 포함한 2차시장(secondary market)을 활성화 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다시 논의가 활성화되게 되었고, 이에 FCC는 주파수 임대 절차를 좀더 간소화하게 되었다. FCC는 주파수의 임대를 허용하는 조치가 새로운 무선통신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 FCC 개선안의 주요 내용

주파수 임대 관련한 새로운 법안은 주파수의 배타적 사용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유선 및 이동통신 사업권(주파수)보유업체 대부분에게 자신의 주파수를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허

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치에 의해 휴대전화(Cellular), PCS(Personal Communications Services), SMR(Specialized Mobile Radio),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s), 24GHz, 39GHz 등 주파수를 사용하는 다양한 유·무선통신서비스가 영향을 받게 된다. 이번 법안은 과거 주파수 임대행위를 제한하였던 1996년 “Intermountain Microwave” 기준을 대체하게 된다.

새로운 법안에서 FCC는 우선 일반적인 주파수 임대정책(General spectrum leasing policies)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주파수 면허사업자는 주파수 이용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또한 면허조건 내에서는 임대하는 주파수의 양이나 지역, 시간 등에 대하여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편 새로운 법안에서 FCC는 임차인에게 부여되는 권리와 책임의 범위에 따라 선택적인 주파수 임대 구조(Alternative spectrum leasing mechanism)를 제시하였다.

〈표〉 선택적인 주파수 임대 구조

임대옵션 1	임대옵션 2
주파수 관리자로서의 임대 ("Spectrum manager" leasing)	사실상의 주파수 이전 임대 (De facto transfer leasing)
쌍방간의 주파수 임대 계약상 사업권/주파수 보유 업체가 주파수에 대한 법적인 권한과 동시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주파수 관리자의 역할로서 주파수 미보유업체에게 주파수를 임대하는 경우가 이 경우 FCC가 규정한 주파수 임대에 대한 기준에 따른다면 FCC의 사전 승인 없이 주파수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쌍방간의 주파수 임대 계약상 사업권/주파수 보유 업체가 주파수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보유하지만 사실상의 권한은 임대를 통해 주파수 미보유업체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장·단기 임대 계약의 경우가 이 경우는 주파수 임대에 대한 FCC의 사전 승인을 요구

첫 번째 임대옵션("Spectrum manager" leasing)은 쌍방간의 주파수 임대 계약상 사업권/주파수 보유업체가 주파수에 대한 법적인 권한과 동시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주파수 관리자의 역할로서 주파수 미보유업체에게 주파수를 임대하는 경우로써 이 경우에는 FCC의 사전 승인 없이 주파수 임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파수 관리자로서의 임대("Spectrum manager" leasing)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주파수 임대를 실시하기에 앞서 최소한 21일 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주파수임대에 대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주파수 면허에 따라 부여되는 모든 기술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은 주파수 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 주파수 임차인은 외국인 소유기준과 FCC의 자격부여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주파수 면허인은 주파수 임차인이 통신법상 기준에 맞게 행동하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다.
- 주파수 면허인은 주파수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하여 위원회에 신청 및 통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주파수 임차인은 주파수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설비 등)에 대해서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 FCC는 주파수임대가 공익의 목적에 저해되는가를 조사할 권리가 있다.

두 번째 임대옵션(De facto transfer leasing)은 쌍방간의 주파수 임대 계약상 사업권/주파수 보유업체가 주파수에 대한 법적인 권한은 보유하지만 사실상의 권한은 임대를 통해 주파수 미보유업체에게 이전되도록 하는 장·단기 임대 계약의 경우로써 이 경우는 주파수 임대에 대하여 FCC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상의 주파수 이전 임대(De facto transfer leasing)의 경우 단기<sup>1)</sup>와 장기에 따라 별도의 규정과 절차가 적용된다.

우선 장기간(long-term) 사실상의 주파수 이전 임대(De facto transfer leasing)를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이 적용된다.

- FCC의 사전 승인이 요구되거나 간소화된 절차를 통하여 임대승인이 가능하다.
- 임대신청은 신속히 공고되어야 하며, FCC는 공고된 후 21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 모든 서비스 규칙은 면허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 주파수 임차인은 FCC의 규정을 따르고 임차된 주파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닌다.

한편 단기간(short-term) 사실상의 주파수 이전 임대(De facto transfer leasing)시에는 FCC의 승인이 요구되나, STA(Special Temporary Authority)에 의해 10일 이내에 승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타 주파수 면허인과 임차인의 권한과 책임은 대부분 장기 임대의 경우와 동일하나, 임차인의 경우 일부 면허조건상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다.

### 3. 파급효과 전망

FCC의 주파수 임대 개선안 시행은 미국 통신시장에 다음과 같은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FCC는 주파수 임대를 통하여 주파수 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신규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1) 단기임대(short-term leasing)는 360일 이내의 임대로 정의됨

주파수 보유 통신서비스업체의 경우에는 주파수 임대를 통하여 추가적인 매출원의 확보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주파수가 필요한 통신서비스업체는 입찰을 통하지 않고도 시장가격으로 주파수를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한편, 대부분의 통신서비스 업체는 주파수 보유지역 및 용량과 관계없이 서비스 제공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고객 또한 서비스제공지역 및 용량의 확대, 경쟁 촉진 등으로 인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 [1] Gartner, Wireless Carriers to Reap Benefits of Authorized Spectrum Leasing, 2003. 5. 20.
- [2] FCC, FCC Adopts Spectrum Leasing Rules and Streamlined Processing for License Transfer and Assignment Applications, and Proposes Further Steps to Increase Access to Spectrum Through Secondary Markets., 2003. 5. 15.
- [3] "FCC Eases Rules on Leasing Spectrum for Wireless Firms", Associated Press, 2003. 5. 16.

### 호주의 주파수면허 전환 관련 정책 동향

통신·방송정책연구실 주임연구원 임동민  
(T. 570-4237, dmyim@kisdi.re.kr)

호주의 Productivity Commission은 2002년 7월 호주의 전파통신 규제 현황과 개선방향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그 보고서를 기초로 호주의 주파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호주의 경우 전환은 굳이 소유권의 변동이 없이도, 기기면허(Apparatus Licence)<sup>1)</sup>를 주파수면허(Spectrum Licence)<sup>2)</sup>로 바꾸는 방안으로 정의 할 수 있다. 호주 전파통신법(Radio-communications Act 1992)에 전환의 세부과정이 설명되어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박중훈·김진기·김봉식·공영일·권오상·김 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주요국가의 통신서비스 정책비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12. pp.230~233 참조
- 2) 각주 1)과 같음